

의안번호	2221210
의 퇴 인	김남희의원
회 답 일	2026.9.15.
추 계 번호	26D4628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6조의6 (피의자 신문 등의 녹음)	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,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259조의2 (압수·수색·검증 의 영상녹화)	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·수색·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(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촬영·녹화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·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,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6조의6 (피의자 신문 등의 녹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59조의2 (압수·수색·검증 의 영상녹화)	

2. 상세 사유

□ 피의자 신문 등의 녹음(안 제236조의6 신설)

- 개정안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¹⁾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,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녹음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, 녹음장비 구매 및 설치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영상녹화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, 별도의 음성 녹음장치를 설치할지 등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곤란함

□ 압수·수색·검증의 영상녹화(안 제259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압수·수색·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(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함)로 촬영·녹화하고, 그 영상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영상녹화장치 구입 및 영상기록 보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구매하여야 할 영상녹화장치 또는 신체 착용형 촬영기기 수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영상기록의 보관 방식 등도 정해진 바가 없어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2025년도 경찰청 예산 기준 경찰 바디캠 도입 단가는 88만원임

□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제236조의2(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)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시설을 알려주어야 하며,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